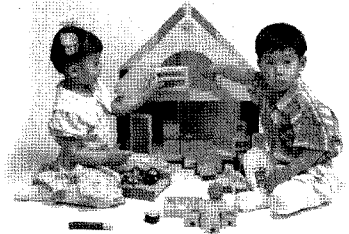


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.

■ 납, 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위한 안전기준 입안예고

개요

- 지금까지 완구, 학용품, 물놀이기구 등 주요 17개 어린이용품에 대하여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여 왔으나,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가소제, 카드뮴, 납 등의 유해물질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.
-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놀이기구, 안경테, 침대 매트리스 등 75개 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진국 수준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된 1개의 안전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(10.8.20) 입안예고 하였다.



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

- 이번 제정안은 적용대상을 17개 품목에서 75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적용할 예정이며, 또한 선진국에서 규제하는 카드뮴, 니켈 등의 유해물질을 규제대상으로 추가하고, 규제기준치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.
- ※ 현재 완구, 학용품 등 17개 품목에 대해 납, 폼알데하이드 등 40여종의 유해물질을 관리
- 그간 어린이용품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카드뮴이 최근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 검출된 바 있고, 다양한 제품의 표면광택, 내식성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니켈이 피부염이나 알레르기를 발생하

는 물질로서 외국에서도 규제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모든 어린이용품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.

※ 카드뮴은 만성 중독될 경우 장기 및 뇌기능 장애 요인

- 또한, 카드뮴의 함유량과 니켈 방출량은 75 mg/kg, 0.5 $\mu\text{g}/\text{cm}^2/\text{week}$ 이하로 사용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.

※ 니켈은 장신구, 안경테, 선글라스, 의류 장식품 등에 함유

- 이밖에 어린이가 장난감이나 학습용품 등에 포함된 소형자석을 잇달아 삼킬 경우 장내에서 서로 끌어당겨 장폐쇄 등의 위험이 있어 아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의 자석이나 자석부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.

※ 자석관리대상품목 : 완구, 가구, 유아용섬유제품, 학습용품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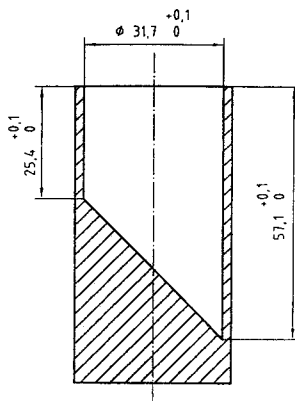
※ 플라스틱 완구에서 떨어져 나간 자석을 삼켜 2세 유아 사망(미국, '05년 12월20일)



-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금번의 안전기준 제정이 마련되면 선진국 수준의 어린이 제품이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◎ 참고 : 자석(hazardous magnet) 및 자석부품 안전요건

- 자속지수(flux index)가 50 가우스(kG2mm2) 보다 크고 크기가 그림 1 실린더 내에 완전히 들어가는 위해한 자석 및 자석부품이 어린이용 공산품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.



<작은 자석 측정 용기>